■ 해양경찰수사규칙 [별지 제117호의4서식] <신설 2026. 10. 2.>

소 속 관 서

제 - 호 . . .

수 신 : 공소청의 장(검사:)

제 목 :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사건번호		
피의자	성명	
	주민등록번호	
죄명		
이행기한		. . 까지
보완수사 요구내용		
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		
비고		

소속관서

사법경찰관 계급 성명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

[별지]

1. 피의자 인적사항

2.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

3.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

4.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 관계

5.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

6. 보완수사로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

7. 보완수사로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

8. 보완수사결과와 증거 관계